



문 의	산업재산보호협력국 다자기구팀	과 장 임현석	042-481-8197
		사무관 윤규선	042-481-8229
	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		

특허청, APEC에 지식재산(IP) 정책을 수출한다

- '중소기업 혁신을 위한 IP 비즈니스 매뉴얼' 개발하여 APEC 회원국에 전파 -

□ 특허청(청장 최동규)은 2월 18일(토) ~ 19일(일) 베트남 나트랑(Nhatrang)에서 개최된 APEC 지식재산전문가그룹(IPEG) 회의에 참석하여 「중소기업 혁신을 위한 IP 비즈니스 매뉴얼(Guidebook for SMEs' IP-Business Cycle)」을 발표했다. 이 매뉴얼은 APEC 회원국 내 중소기업들이 지식재산(IP)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기술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IP 정책 종합안내서이다.

□ 「IP 비즈니스 매뉴얼」의 내용 및 기대효과

○(내용구성) 'IP 비즈니스 매뉴얼'은 선행기술 조사, 특허경영전문가 파견 등 IP 창출 관련 6개 사업, 우수발명 시작품 제작, 특허기술 평가 지원 등 IP 활용 관련 12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.

○(단계별 정리) 매뉴얼에는 각각 다른 여건에 있는 APEC 회원국들이 자국에 적합한 정책을 취사선택 할 수 있도록 쉬운 정책부터 난이도가 높은 정책까지 단계별로 정리되어 있다.

○(수행 주체별 구체적 가이드 제공) 또한 회원국 정책담당자가 매뉴얼을 보고 해당 사업을 즉시 실행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, 정부 및 관련기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있다.

○(기대효과) 「IP 비즈니스 매뉴얼」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 우리나라의 IP 정책을 중심으로 미국, 일본 등 IP 선진국의 우수 지식재산 정책을 조사,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. 특히, 특허청이 다년간 수행해 온 지재권 창출·활용 정책의 경험과 성공 사례들이 망라돼 있다. 특허청은 그동안 특허행정 정보시스템과 심사인력을 수출하는 등 특허행정 한류를 주도하여 왔으며, 이번 「IP 비즈니스 매뉴얼」 개발을 통해 개도국에 우리나라의 IP 정책을 수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□ 특허청 임현석 다자기구팀장은 “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전략적 지식재산 활용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데, 이 매뉴얼이 APEC 역내 중소기업들의 혁신에 큰 도움이 되어 우리나라가 지재권 선진국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는데도 기여하기를 바란다”라고 말했다.

붙임 1 : 「중소기업 혁신 위한 IP 비즈니스 매뉴얼」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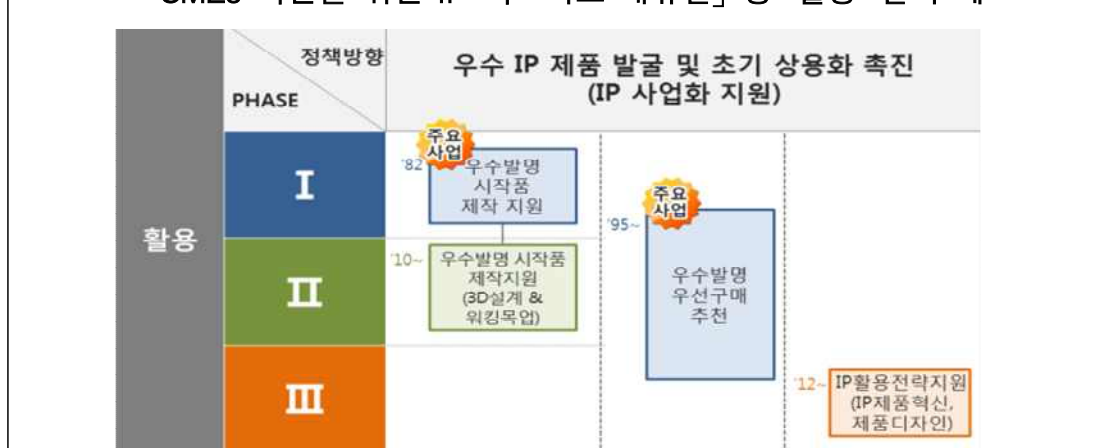
붙임 2 : APEC 및 APEC IPEG(지재권전문가그룹) 개요

붙임 1 「중소기업 혁신 위한 IP 비즈니스 매뉴얼」 개요

□ 개 요

- (매뉴얼명) 「중소기업 혁신을 위한 IP 비즈니스 매뉴얼 (Guidebook for SMEs' IP-Business Cycle)」
 - (추진 과정) ① 우리나라 및 선진국 IP 지원정책 서면조사, ② 개도국 정책 수요 조사(온라인 설문, 심층방문 조사), ③ 조사된 정책을 분석, 발전단계별로 분류한 뒤 사업별 구체적 가이드 제공
 - (주요 내용) 우리나라 및 IP 선진국의 IP 창출·활용 지원 정책을 조사·분석한 IP 지원정책 종합 가이드북
 - 조사된 정책을 종류별로 구분하고 발전단계별로 정리하여 IP 창출 6개 사업, IP 활용 12개 사업을 최종 선정
 - APEC 회원국이 자국의 환경에 맞는 IP 정책을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매칭표를 제공하고, 각국 정책입안자가 정책을 즉시 실행할 수 있도록 수행 주체별* 구체적 가이드 제공
- * 공공기관, 사업수행기관, 중소기업 등

< 「SMEs 혁신을 위한 IP-비즈니스 매뉴얼」 중 ‘활용’ 분야 예>



- (기대 효과) 우리나라 우수 IP 정책을 수출하여 APEC 개도국의 중소기업 혁신을 지원하고, IP 선진국으로서의 위상 제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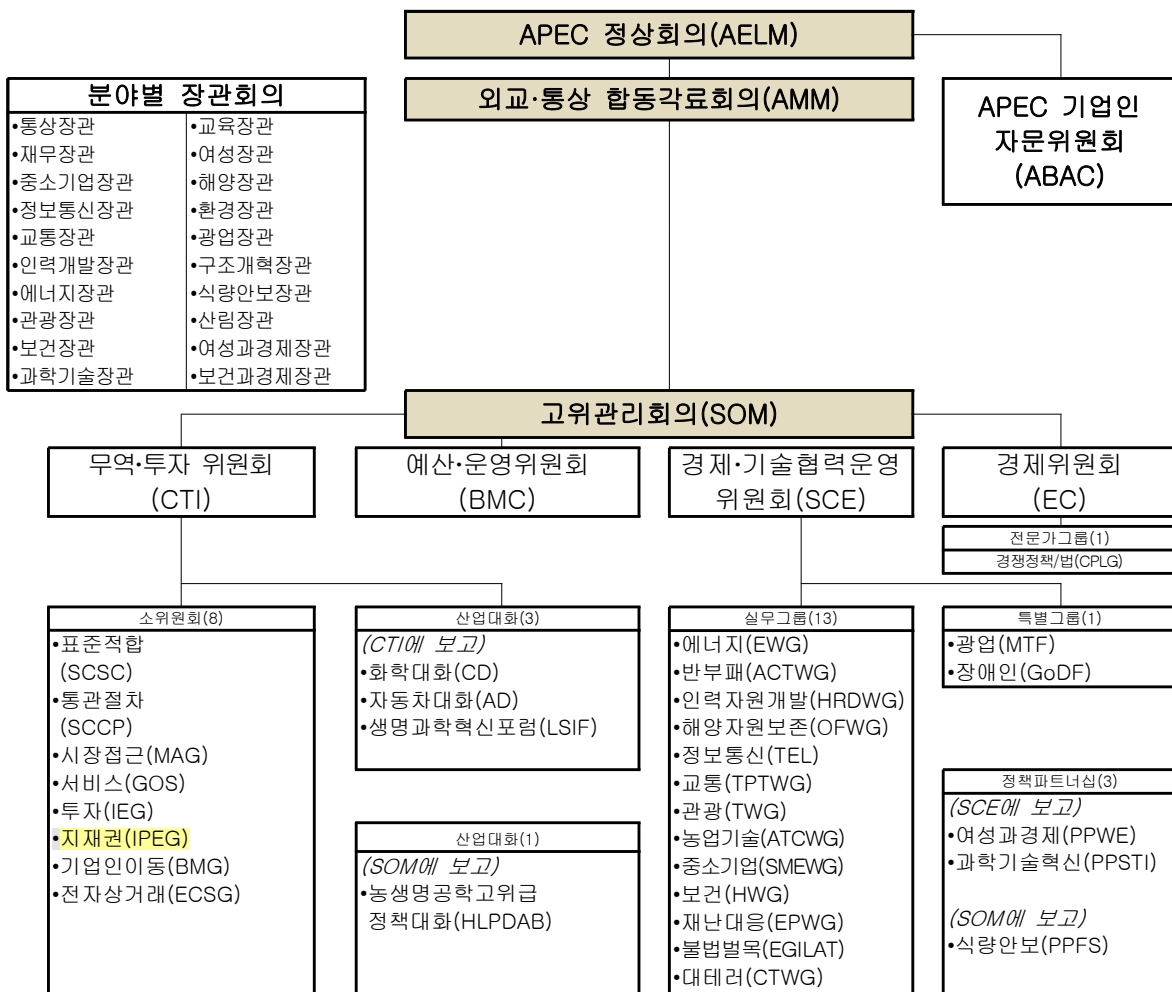
붙임 2 APEC 및 APEC IPEG 개요

< APEC(Asia-Pacific Economic Cooperation) >

□ 개 요

- (목적) 무역·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(단기) 및 아시아태평양 경제공동체 건설(중장기)
- (분포) 21개국(동아시아 12개국, 미주 5개국, 대양주 3개국, 유라시아 1개국)
 - ※ 동아시아(한국, 중국, 일본, 대만, 홍콩, 인도네시아, 말레이시아, 베트남, 태국, 필리핀, 싱가포르, 브루나이), 미주(미국, 캐나다, 멕시코, 페루, 칠레), 대양주(호주, 뉴질랜드, 파푸아뉴기니), 유라시아(러시아)

□ 조 직



< APEC IPEG >

□ 개 요

○ (명칭) APEC 지식재산권 전문가그룹*

* IPEG : IP Rights Experts' Group (APEC 무역투자위원회(CTI) 산하 전문가 회의체)

○ (목적) 지재권 관련 협력구상(Initiative)*의 채택 및 사업**의 수행을 통하여 지재권 발전과 상호 협력을 추구하는 비구속적 협의체

*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 사항

** APEC 기금 또는 회원국 재원으로 세미나, 콘텐츠 개발, 조사 등 사업 추진

<IPEG의 목표>

- ① 지재권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
- ② 지재권 보호 및 관리 체계에 대한 조사 및 정보 교환
- ③ 지재권의 효과적 집행을 위한 대책 연구
- ④ TRIPS 협정의 완전한 이행
- ⑤ TRIPs를 이행하는 국가들을 돕기 위한 기술 협력의 촉진

○ (경과) '96. 4. 제1차 회의(싱가포르) 개최 후 현재 43회 개최(연 2회)

※ 제44차 APEC IPEG 회의 베트남 나트랑에서 개최 예정('17. 2. 16.~20.)

□ APEC IPEG 주요 활동

○ 지재권 관련 협력 구상(Initiative)의 채택 및 후속조치 실행

-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기본 사항을 담은 문서를 '구상'의 형식으로 제출하고 채택된 경우 그 후속조치를 통해 사업 진행

○ 사업(Project) 수행

- APEC 펀드 또는 자체 예산을 이용하여 APEC 회원국 대상의 지재권 관련 경제협력 구상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 사업 수행

○ 주제 발표 및 토론

- 각국 지재권 정책·법률 등의 개선사항 및 지재권 사업 소개를 통해 회원국 간 정보 공유 및 국제적 홍보 수행